

### 3.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

제정일 : 1996년 10월 20일

**제1조 (해석적용)**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교원인사규정(이하 규정이라 한다)의 해석 적용은 본 시행세칙에 의한다.<개정 2013.2.5.>

**제2조 (계약 시기)** 규정 제11조 2항의 계약은 해당 사항 발생 시 행한다. <개정 2020.1.22.>

**제3조 (초급 교원의 임용)** <삭제><본조삭제 2013.2.5.>

**제4조 (박사학위 과정 이수자의 정의)** 규정 제13조의 학위 과정 이수자라 함은 소요 학점을 취득하고 어학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.

**제5조 (승진)** 교원의 승진에는 총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.

#### 제6조 (연구업적)

- ① 승진에 필요한 연구업적으로는 현 직위 근무 기간 중에 다음과 같이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논문을 <삭제>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 <삭제 2016.1.29.>
- ② <삭제 2016.1.29.>
- ③ 인사위원회는 4항의 평가 결과를 승진에 반영한다. <개정 2016.1.29., 2020.1.22.>
- ④ 연구업적으로서의 논문 실적 배점은 다음과 같다.<본조 신설 2016.1.29.> <개정 2020.1.22.>

논문의 구분		배점의 구분
국내 학진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혹은 해외 학술지		논문 한편 당 40점
『한국신학』 혹은 『베뢰아논단』 등의 베뢰아권 학술지, 국내일반 학술지 및 출판물		논문 한편 당 20점
저작	전공 관련 저서 출판	단독 한편 당 50점 단독 외 한편 당 25점
	전공 번역서 및 편저서	단독 한편 당 50점 단독 외 한편 당 25점

**제7조 (초임 교원의 승진)** 초임 교원은 계약기간 만료 후가 아니면 승진될 수 없다.

#### 부 칙

(시행일) 본 세칙은 1996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본 세칙은 201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본 세칙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본 세칙은 202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